

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-789호(2008. 11. 14)

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-837호(2009. 12. 15)

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-694호(2013. 12. 11)

전기용품안전기준

K 10012

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

-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

부 칙(고시 제2013-694호, 2013.12.11)

전기용품안전기준 K 10012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목 차

1. 적용범위	1
2 정 의	1
3 일반 요구사항	2
4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	2
5 공 란	2
6 분 류	2
7 표시 및 사용설명	2
8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	2
9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	2
10 정격 입력 및 전류	2
11 온도상승	2
12 공 란	3
13 운전시의 누설 전류 및 절연내력	3
14 공 란	3
15 내습성	3
16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	3
17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	3
18 내구성.....	3
19 이상 운전	3
20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	3
21 기계적 강도.....	4
22 구 조	4
23 내부 배선	4
24 부 품	4
25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	4
26 외부 전선용 단자	4
27 접지 접속	5
28 나사 및 접속	5
29 연면거리,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절연거리	5
30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	5
31 내부식성	5
32 방사선,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.....	5
부속서	5

전기용품안전기준(K 10012)

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

제2부 :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

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-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ealth appliances

서문 이 기준의 기본 시험은 K 60335-1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, 제1부 : 일반 요구사항)에 따른다.

1. 적용범위

제1부의 이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:

본 규격은 정격 전압이 단상인 경우 250 V이하, 기타인 경우 480 V 이하인 가정용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안전성에 적용한다.

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기라도, 점포, 경공업 및 농장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비고1 - 이러한 기기의 예는 가정 및 헬스클럽에서 사용된다.

이 규격은 가정 내 외부의 사람들이 실제 겪게 될 일반적 위험 요소를 다룬다.

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는다.

-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어린이나 환자에 의한 기기의 사용
- 어린이가 기기를 갖고 노는 행위

비고 2 -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.

- 차량이나 배,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.
- 열대지방에서 사용하도록 제조된 기기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.
-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 보건 관계기관, 노동안전 관계기관에 의해 요구사항을 별도로 추가 규정할 수 있다.

비고 3 - 이 규격은 부식성, 폭발성의 물질(먼지, 증기, 가스)이 있는 특수 조건에서 사용하는 기기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.

2. 용어의 정의

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의 항목을 적용한다:

2.2.9 대체:

통상동작 : 기기는 무부하 최고속도로 운전한다.

2.101 추가

러닝 벨트 : 걷거나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면을 가지는 벨트

3. 일반 요구사항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4.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5. 공란

6. 분류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7. 표시 및 사용설명

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의 항목을 적용한다.

7.1 추가

러닝벨트가 있는 기기는 최대 사용가능 체중(kg)을 표기하여야 한다.

7.12 추가

러닝 벨트가 있는 기기는 사용설명서에 다음과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늘어지는 의류나 타월 등을 걸치고 사용하지 마시오, 수건 등을 기기에 걸쳐 놓지 마시오
- 주행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과 오일사용에 대한 내용
- 설치 시 안전공간 확보에 관한 내용
- 비상착지 및 비상정지에 관한 내용

8.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9.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.

10. 입력 및 전류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11. 온도상승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12. 공란

13. 운전시의 누설 전류 및 절연내력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14. 공란

15. 내습성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16. 누설 전류 및 절연내력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17.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18. 내구성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.

19. 이상 운전

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의 항목을 적용한다:

19.7 추가:

사람의 발 아래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온도가 포화 될 때까지 동작시킨다. 기타 기기는 30초간 동작시킨다.

19.9 적용하지 않음.

19.10 추가:

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된 상태에서도 시험을 행한다.

20.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21. 기계적 강도

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의 항목을 적용한다:

추가:

발 밑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20 cm x 30 cm의 면적에 고르게 분포된 90 kg 무게로 15 cm ± 2 cm 높이에서 10회 자유낙하 시킨다. 시험후 기기는 이 규격의 적합성을 상실하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.

22. 구조

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의 항목을 적용한다:

22.101 기기는 신체의 일부를 끌어당길 수 없는 구조이고, 움직이는 부위에 걸리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.

적합여부는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.

22.102 의도되지 않은 오작동 및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**장치**를 가져야 한다. 스위치는 기기 사용자에게 의하여 신속히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, **장치를 동작시켰을 경우에** 기기의 급제동으로 위험을 가져다 줄 경우 기기는 급제동 **되지** 말아야 한다.

적합여부는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.

20.103 추가

접을 수 있는 기기의 경우 접혀진 상태에서 기기는 동작되지 않아야 한다.

적합여부는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.

23. 내부 배선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24. 부품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25.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26. 외부 전선용 단자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27. 접지 접속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28. 나사 및 접속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29. 연면거리,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절연거리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30. 내열성,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

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의 항목을 적용한다:

30.2.3 적용하지 않는다.

31. 내부식성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.

32. 방사선,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

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부속서

제 1부의 부속서를 적용한다.